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트러스톤TDF203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4. 트러스톤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5. 트러스톤TDF205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u>